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26일

발의자 : 정윤주, 소형준, 이인순, 고영옥,
진선아, 강수진, 권영애, 경수현

1. 제안이유

본 조례 개정안은 스마트폰 등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어린이·청소년
다수가 문해력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서울특
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임.

이에 성북구의회 의원 발의로서 청소년의회의 의견을 성북구 정책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서 “인터넷중독” 예방으
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
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를 “서
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로 개정함.

- 나. 제명 개정사항을 본문에 반영함.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
- 다. “인터넷중독”에 대하여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제2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사전협의 : 아동청소년과
- 라. 입법예고 : 2023. 9. 26. ~ 2023. 10.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중독”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로, “인하여 청소년이”를 “이용자가”로, “없는”을 “없을 정도로”로 한다.

제3조 중 “인터넷게임 중독의”를 “인터넷중독의”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인터넷게임 중독”을 각각 “인터넷중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중독”으로 한다.

제6조 중 “인터넷게임 중독으로부터”를 “인터넷중독으로부터”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인터넷중독 예방”으로 한다.

제7조 중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으로,

“인터넷게임 중독 관련”을 “인터넷중독 관련”으로 한다.

제8조 중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중독”으로 한다.

제9조 중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중독”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u> <u>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u>	<u>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u> <u>인터넷중독 예방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북구 청소년의 <u>인터넷게임 중독</u>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 략) <u>“인터넷게임 중독”</u>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u>없는</u>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u>인터넷게임 중독의</u> 위험성 홍보 및 폐해로부터 보호</p>	<p>제1조(목적) ----- ----- <u>인터넷중독</u>----- ----- ----- ----- ----- ----- -----.</p> <p>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u>“인터넷중독”</u>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 <u>없을 정도</u>로 ----- -----.</p> <p>제3조(책무) ----- ----- ----- <u>인터넷중독의</u> ----- -----</p>

<p>하고 <u>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u>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u>인터넷중독 예방교육</u> ----- ----- -----.</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u>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u>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u>인터넷중독</u> ----- ----- -----.</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 <u>인터넷게임 중독 예방</u>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u>인터넷게임 중독 예방</u>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u>인터넷게임 중독 예방</u>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u>인터넷게임 중독 예방</u>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인터넷중독</u> ----- ----- ----- 2. ----- <u>인터넷중독</u> ----- ----- 3. ----- <u>인터넷중독</u> ----- ----- -- 4. ----- <u>인터넷중독</u> ----- ----- -----
<p>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u>인터넷게임 중독 예방</u>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조(실태조사) ① ----- ----- <u>인터넷중독</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u>인터넷게임 중독으로부터</u>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u>인터넷게임 중독 예방</u>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 ----- <u>인터넷중독으로부터</u> ----- ----- <u>인터넷중독 예방</u> ----- -----.</p>
<p>제7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u>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교육</u>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u>인터넷게임 중독 관련 전문가</u>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p>	<p>제7조(전문가 등 자문) ----- ----- <u>인터넷중독 예방교육</u> ----- ----- <u>인터넷중독 관련</u> ----- -----.</p>
<p>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u>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u>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8조(예산의 지원) ----- --- <u>인터넷중독</u> ----- ----- ----- ----- ---.</p>
<p>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u>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u>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9조(협력체계 구축) ----- --- <u>인터넷중독</u> ----- ----- ----- ----- -----.</p>